

■ 관보규정 시행규칙 [별표 1]

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(제4조제2항 관련)

1. 법령의 경우

-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에 “중 정정”을 표기하고, 관보 발행호수 및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을 그대로 표기

(예시)

○○○ 부령 제000호(○○○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)
관보 제000호(0000.00.00.)에 게재된 “○○○부령 제000호(○○○시행규칙 일부개정령)”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○○○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발행된 관보 내용	정정할 내용	기존 관보 내용의 상세 정보(발행호, 일자, 쪽, 줄 등)

2. 고시·공고 등의 경우

- 고시(공고) 등을 발령하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새로운 고시(공고) 등의 번호, 관보발행호수 및 날짜를 기재하고, 기존의 관보에 게재된 제목을 그대로 표기

(예시)

● ○○○부 공고 제0000-000호

관보 제000호(0000.00.00.)에 게재된 “○○○부 공고 제0000-000호(○○○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)”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○○○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발행된 관보 내용	정정할 내용	기존 관보 내용의 상세 정보(발행호, 일자, 쪽, 줄 등)